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고시 제2003-47호(2003. 12. 17)

환적화물처리절차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2003년 12월 17일 관세청장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0조 내지 제141조 규정에 의한 환적화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싣는 것을 말한다.

2. “내국환적운송”이라 함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외국무역 선(기)”에 의하여 국내 개항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기)에 의해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제 2 장 입항 및 하선(기) 절차

제4조(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① 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 및 제출의무자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적하목록 작성방법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5조(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병화물 해당 여부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하역) ① 환적화물의 일시양륙신고는 하선 및 하기신고로 갈음한다.

② 환적화물을 하역하여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장소에 한한다.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기)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2.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기)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반입사유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입신고)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입시 반입예정정보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하선(기) 보세구역 운영인이 하선(기)장소에 하역된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적화물을 하선장소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CY내에서 화물의 적출입작업을 위해 CFS로 반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컨테이너적출입 작업 등) ①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컨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대장 관리 등을 통해 적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보세구역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환적화물의 컨테이너적출입작업은 당해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다.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라.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포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적출입작업을 완료한 자는 작업완료 익일까지 검수회사 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나. 환적화물이 내장된 LCL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신고한 경우

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하목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작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환적화물 운송절차에 대한 특례

제9조(보세운송) ① 환적화물의 보세운송신고는 입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으로 운송하여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환적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공항항역내 1개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선단 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은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로서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목적지는 물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공항 및 항만의 하선(기)장소에 한한다. 다만, LCL화물로서 컨테이너적출입작업 및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세운송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세운송신고인)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화주(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화주 등”이라 한다)가 환적화물을 직접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절차)

① 선박으로 운송하여 다음에 계기하는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환적화물(이하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이라 한다)은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 입항지 • 운송 목적지 • 대상화물 • 인천항, 평택항

- 인천공항내 보세구역

- Master B/L단위의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운송업체와 기적예정지(인천공항내보세구역)를 House B/L단위로 적하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은 적하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을 신청한 물품중 하선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송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입항지 세관장에게 해상항공 연계 환적화물운송신고 취하신청을 하여야 하며, 취하신청은 선사가 동물품의 하선장소를 최초 입항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보세화물입출항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정한 하선기간을 준용한다.

제12조(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기)에 의한 화물운송)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기)에 의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상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

2. 환적화물 3. 수출화물 4.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적재 및 하선하고자 하는 화물의 명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신고는 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보수작업

제13조(보수작업대상) 세관장은 환적화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환적화물을 효율적인 운송 등을 위해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작업의 한계)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16조(보수작업의 감독) ①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타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출항 및 적재절차

제17조(적재)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출항지에서 적재하고자 하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시 제출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별지4호 서식)를 선박 출항전 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의거 검수(검정) 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 고시에 의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3조(우선적용) 환적화물에 대하여 이 고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